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851

발의연월일: 2024. 11. 25.

발 의 자:한창민·김재원·장경태

정혜경 • 전종덕 • 이연희

서미화 · 김남희 · 백승아

문정복 • 오세희 • 김용민

황우하 • 민형배 • 민병덕

유종군 • 용혜인 • 박홍배

장철민 · 이강일 · 조 국

한정애 · 윤종오 의원

(2391)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회복지사 및 관련 업무 종사자가 업무 현장에서 신체적·언어적 폭력를 입고 있으며, 이러한 폭력 피해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실태 파악이나 적극적인 대처 방안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폭력 피해 실태와 그에 대한 조치 현황을 조사·공표하게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폭력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법률 제 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준수율 등에"를 "준수율, 사회복지사 등의 폭력 피해실태 및 그에 대한 조치 현황 등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사 등의 폭력 피해 실태 및 조치 현황 조사에 대한 적용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이내에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폭력 피해실태 및 그에 대한 조치 현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과 신분보장) ① ~ ③ (생	과 신분보장) ① ~ ③ (현행과
략)	같음)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	4
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	
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	
별 <u>준수율 등에</u> 관하여 3년마	<u>준수율,</u> 사회복지사 등의 폭
다 조사 · 공표하여야 한다.	력 피해실태 및 그에 대한 조
	치 현황 등에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